

[변경 대비표]

1. 펀드명 : 우리프랭클린미국바이오헬스케어증권투자신탁(주식-재간접형)

2. 효력발생일 : 2024.10.11

3. 정정사유

-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
-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
<규약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8. CLASS S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9. CLASS 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</p> <p>13. CLASS S-P1 수익증권 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및 종류)</p> <p>④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8. CLASS S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p> <p>9. CLASS S-P 수익증권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13. CLASS S-P1 수익증권 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</p>

	<p>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	<p>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</p>
--	---	---

<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p>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p>	<p>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-</p>	<p>[요약정보]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 수익률), 운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</p>	<p>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제2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	<p>[요약정보] 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제2부. 6. 나. 종류형 구조 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,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</p>
<p>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p>	<p>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-</p>	<p>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,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, 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</p>
<p>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</p>	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</p>	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</p>

<p>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</p>	<p>(2)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 투자증권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1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(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)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전자매체(온라인) 전용 수익증권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</p>	<p>(2) 종류별 가입자격 수수료후취-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 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수익증권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개인연금(S-P)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</p> <p>수수료미징구-온라인슈퍼-퇴직연금(S-P1)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(단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 전용으로 설정·설립된 경우는 제외)가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[가입자격(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)에 제한이 있는 종류 수익증권 제외]보다 판매보수가 낮고, 판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는 수익증권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<간이투자설명서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기준일자 변경에 따 른 업데이 트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 용전문인력 -	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, 운 용전문인력 기준일자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금융투자회 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 반영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 자증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 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 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 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 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 공되지 않습니다.	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온라인슈퍼(S): 집합투자업자의 공동판매채 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종 류 S 수익증권(종류 S-T 및 S-P 수익증권 포함)을 취급하고,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 판매시스 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,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 기구입니다. 다만,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 니다.